# 이 책에서 사용하는 기술 용어집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다음 항목은 이 책 전반에서 사용하는 기술 용어를 이 책이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정의합니다. 스위스법이나 싱가포르법에 법률상 정의가 있는 용어는 해당 항목에서 이를 밝히고 출처를 제시합니다. 기술자와 법률가가 용어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이 책이 채택한 법률적 용법을 제시합니다. 다른 항목에 대한 상호 참조는 이탤릭체로 표시합니다.

**계정 모델(Account model)** — 이더리움처럼 각 주소가 거래에 따라 증감하는 잔고를 갖는 원장 설계로,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UTXO* 모델과 대비됩니다. 이 구분은 법원이 자금을 추적하는 방식과 수탁기관이 혼합 보관된 고객 자산을 귀속시키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소(Address)** — 공개키에서 도출된 문자열로, 원장상 토큰의 목적지를 식별합니다. 누구나 비용 없이 만들 수 있으며 이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주소가 자연인과 연결될 수 있게 되면 스위스와 싱가포르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에어드롭(Airdrop)** — 대가 없이 기존 주소에 토큰을 배포하는 것으로, 대개 초기 사용자에게 보상하거나 보유를 더 넓게 분산시키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에어드롭은 수령인이 트레이더인지 개인 투자자인지에 따라 소득으로 또는 취득원가 0의 취득으로 과세상 결과가 발생합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Algorithmic stablecoin)** — 완전한 담보 없이 공급량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려는 토큰으로, 2022년 5월 붕괴하기 전까지 테라폼의 UST가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과 싱가포르 통화청(MAS) 모두 규제상 이러한 토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AMLA** — 스위스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ct, Geldwäschereigesetz, GwG), SR 955.0으로, 금융중개기관에 적용됩니다. FINMA는 고객의 가상자산에 대한 처분권을 보유하는 대부분의 제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해 왔습니다.[1]

**자산준거토큰(Asset-referenced token, ART)** — 규정(EU) 2023/1114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MiCA의 범주로, 여러 통화를 포함하여 어떤 가치나 권리 또는 그 조합을 준거로 삼아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가상자산을 말합니다. 단일 통화 기반의 전자화폐토큰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자산형 토큰(Asset token)** — 2018년 2월 16일자 ICO 가이드라인 3.1절에 따른 FINMA의 범주로, 채권 또는 지분 청구권, 장래 수익에 대한 지분 또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는 토큰을 말합니다. 이러한 토큰은 거의 모든 경우 스위스법상 증권에 해당하며, 투자설명서 및 라이선스 관련 결과가 따릅니다.

**자동화 마켓메이커(Automated market maker, AMM)** — 매수·매도 주문을 매칭하는 대신 공동 유동성을 상대로 공식에 따라 거래 가격을 정하는 탈중앙화 거래소로, 유니스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제VI장의 분석에 따르면 AMM 거래의 상대방은 해당 풀의 유동성 공급자 전체입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블록(Block)** — 하나의 단위로 원장에 추가되는 거래의 묶음으로, 직전 블록의 해시를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블록들은 체인을 이루며, 누구나 그 변경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블록 익스플로러(Block explorer)** — Etherscan이나 mempool.space와 같이 공개 원장의 내용을 읽기 쉬운 형태로 보여주는 웹사이트입니다. 법률가는 거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블록 익스플로러에서 그 거래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브리지(Bridge)** — 한 원장의 토큰을 다른 원장에서 표상하는 장치로, 대개 원래 토큰을 계약에 잠그고 목적지 체인에서 래핑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브리지는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난 사건들이 발생한 곳입니다.

**소각(Burn)** — 토큰을 사용할 수 없는 주소로 보내거나 공급량을 줄이는 계약 함수를 호출하여 토큰을 되돌릴 수 없게 파기하는 것입니다. 소각은 *LP* 토큰을 상환하거나 상환 시 스테이블코인을 폐기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본시장상품(Capital markets product)** — 2001년 증권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Act 2001, SFA) s. 2(1)에 따른 싱가포르 법률상 범주로, 증권, 집합투자기구의 지분, 파생상품계약 및 특정 외환계약을 포함합니다. 자본시장상품에 해당하는 토큰은 *DPT*에도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SFA에 따라 규제됩니다.

**CBDC**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로, 토큰 형태의 중앙은행 부채를 의미합니다. 도매형은 금융기관에 한정됩니다. 소매형은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와 싱가포르 모두 시범사업에서 도매형 CBDC를 발행했으며, 어느 쪽도 소매형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인(Chain)** — 블록들이 사슬처럼 연결된 데서 비롯된, 분산원장을 가리키는 구어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온체인'은 원장에 기록된 것을, '오프체인'은 수탁기관의 내부 장부 등 다른 곳에 기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콜드 월렛(Cold wallet)** — 개인키가 인터넷에 전혀 연결되지 않은 장치에 보관되는 월렛으로, 서명에 수동 절차가 필요하며 원격으로 키를 탈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핫 월렛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 — 스위스법상으로는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를 위해 모집되어 제3자가 투자자의 계산으로 운용하는 자산을 말합니다(집합투자법(CISA) 제7조). 싱가포르법상으로는 참여자가 전체로서 운용되는 공동 재산에 대해 일상적인 통제권을 갖지 않는 약정을 말합니다(SFA s. 2(1)). 여러 디파이 구조가 두 정의를 모두 충족합니다.

**보증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CLG)** — 회사법(Companies Act 1967) s. 17에 따른 주식자본이 없는 싱가포르 회사로, 구성원은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 명목상의 금액을 출연하기로 약정합니다. 프로토콜 래퍼로 사용되며 흔히 '재단'이라고 불리지만 재단이 아닙니다.

**컨펌(Confirmation)** — 거래가 블록에 포함되는 것과 그 위에 쌓이는 후속 블록 각각을 말합니다. 따라서 6회 컨펌을 요구하는 거래소는 입금을 반영하기 전에 5개의 추가 블록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대기 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개 원장의 최종성이 확률적이기 때문입니다.

**합의(Consensus)** — 원장 참여자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도 다음 블록에 합의하는 프로토콜로, 작업증명과 지분증명이 두 가지 주요 계열입니다.

**가상자산(Crypto asset)** — 이 책이 분산원장에 기록된 모든 토큰을 가리키는 일반 용어로 사용하며, 채무추심 및 파산법(DEBA) 제242a조와 은행법(BankA) 제16조의 스위스 법률 용어인 '가상자산 기반 자산'(kryptobasierter Vermögenswert)에 해당합니다.

**수탁기관(Custodian)** — 고객의 토큰을 통제하는 개인키를 보유하는 자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에 따라 라이선스가 필요한 지급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스위스에서는 보유자가 AMLA상 금융중개기관이 되며, 자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면 은행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AO** — 탈중앙화 자율조직(decentralised autonomous organisation)으로, 스마트 계약을 통한 토큰 가중 투표로 프로토콜이나 트레저리를 관리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법적 래퍼가 없으면 DAO는 스위스법상 단순조합이고, 싱가포르법상 조합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입니다.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sed finance, DeFi)** — 고객 자산을 보유하는 중개기관 없이 공개 원장상의 스마트 계약으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로, 2022년 12월 16일자 연방평의회 보고서가 스위스의 기준 문헌입니다.

**위임 스테이킹(Delegated staking)** — 보유자가 출금 키를 보유하고 검증 권한만 운영자에게 위임하는 스테이킹으로, 수탁기관이 모든 키를 보유하는 수탁형 스테이킹과 대비됩니다.

**파생 경로(Derivation path)** — BIP-32 표준에 따라 시드가 개별 키 쌍을 생성하는 순서로, 하나의 시드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여러 체인의 주소를 통제합니다. 따라서 보유 자산 목록을 작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경로를 검색해야 합니다.

**디지털 지급 토큰(Digital payment token, DPT)** — 2019년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2019, PSA) s. 2(1)에 따른 싱가포르 법률 용어로, 가치의 디지털 표상으로서 어떤 통화로도 표시되지 않고,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며, 전자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토큰을 말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는 DPT입니다.[2]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자(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 DTSP)** —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외부의 고객에게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2025년 6월 30일부터 2022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 Part 9에 따라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MAS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DTSP에 라이선스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 토지, 주식 또는 금과 같이 다른 등록부에 기록된 자산을 표상하는 토큰입니다. 권원은 그 다른 등록부가 규율하므로, 토큰은 등록된 소유자와 토큰 보유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는 청구권 또는 표상에 불과합니다.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 다수의 참여자가 동일한 사본을 보유하고 합의를 통해 갱신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키는 일반 용어입니다. 2020년 9월 25일자 스위스 DLT법은 특정 아키텍처를 전제하지 않고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DLT 거래시설(DLT trading facility)** — 금융시장인프라법(FinMIA) 제73a조 이하에 따른 스위스 라이선스 범주로, 원장 기반 증권을 다자간 거래에 상장하고 결제 및 보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거래장소를 말합니다. SIX Digital Exchange가 최초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화폐(E-money)** — 2019년 지급서비스법 s. 2(1)에 따라, 통화로 표시되고, 선지급되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을 표상하고, 제3자가 지급수단으로 수령하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화폐가치를 말합니다.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전자화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화폐토큰(E-money token, EMT)** — 규정(EU) 2023/1114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MiCA의 범주로, 하나의 공식 통화를 준거로 삼아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가상자산을 말합니다. EU에서는 신용기관과 전자화폐기관만 EMT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ERC-20** — 대체 가능 토큰에 관한 이더리움 표준으로, 토큰 계약이 제공해야 하는 함수를 정의하며 이더리움 및 호환 체인상의 대부분의 토큰이 이를 따릅니다. ERC-721과 ERC-1155는 *NFT*에 관한 해당 표준입니다.

**익스플로잇(Exploit)** — 스마트 계약의 결함을 이용하여 계약의 의도된 작동에 반해 가치를 빼내는 것입니다. 익스플로잇이 절도인지, 사기인지, 아니면 공개된 코드의 적법한 사용인지는 제H편 제I장과 제N편 제I장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최종성(Finality)** — 원장의 규칙에 따라 거래를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시점으로, 작업증명 체인에서는 확률적이고, 지분증명 체인에서는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 경제적으로 확정되며, 허가형 원장에서는 결정론적입니다.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y)** — 스위스 AMLA 제2조 제3항의 용어로, 업으로서 타인의 자산을 수령, 보유, 투자 또는 이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처분권을 보유하는 대부분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금융중개기관이며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해야 합니다.

**플래시 론(Flash loan)** — 단일 거래 내에서 차입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무담보 대출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래 전체가 실패합니다. 차익거래에 적법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오라클을 조작하고 프로토콜의 자산을 빼내는 데 부당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포크(Fork)** — 원장의 이력이나 규칙이 갈라지는 것으로, 소프트 포크는 호환성을 유지하며 규칙을 강화하는 반면 하드 포크는 두 개의 체인을 만들어 냅니다. 하드 포크 후에는 원래 토큰의 각 보유자가 두 체인 모두에서 동일한 수량을 보유하게 됩니다.

**재단(Foundation, Stiftung)** — 스위스 민법 제80조 이하에 따라 재산을 특정 목적에 출연하여 설립되는 스위스 법인으로, 이사회가 운영하고 공공기관이 감독합니다. 추크에서 프로토콜 트레저리를 위한 표준 래퍼로 자리 잡았습니다.

**프런트엔드(Front-end)** — 사용자가 스마트 계약과 상호작용하는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연방평의회와 MAS 모두 그 운영자를 디파이 규제의 자연스러운 수범자로 지목했습니다.

**가스(Gas)** — 거래 처리 대가로 원장의 검증인이나 채굴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원장의 기본 토큰으로 표시됩니다. 가스는 사업 비용이며, 해당 활동이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와 같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거버넌스 토큰(Governance token)** — 프로토콜의 파라미터, 트레저리 또는 업그레이드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하는 토큰입니다. 그 규제상 분류는 투표로 보유자에게 경제적 가치를 배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시(Hash)** — 일방향 함수를 통해 데이터로부터 계산되는 고정 길이의 지문으로,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해시도 바뀝니다. 해시 덕분에 블록을 서로 연결할 수 있으며 누구나 원장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핫 월렛(Hot wallet)** — 개인키가 인터넷에 연결된 시스템에 있어 즉시 서명할 수 있는 월렛으로, 수탁기관이 출금용 유동자금을 위해 사용하며 통상적인 도난의 표적이 됩니다. 콜드 월렛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하이브리드 토큰(Hybrid token)** — 둘 이상의 경제적 기능을 가진 토큰으로, FINMA는 2018년 2월 16일자 ICO 가이드라인 3.1절에 따라 해당하는 각 범주의 요건을 중첩적으로 적용합니다.

**최초 코인 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 —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새로 만든 토큰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2017년과 2018년을 지배한 용어였으나 이제는 대체로 '토큰 세일'이나 '토큰 생성 이벤트'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FINMA의 2018년 ICO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스위스의 분류 기준입니다.

**키 조각(Key share)** — 다자간 연산 방식에서 한 당사자가 보유하는 개인키의 일부로, 당사자들 사이의 키 조각 배치가 규제 및 도산 목적상 누가 통제권을 갖는지를 결정합니다.

**레이어 2(Layer 2)** — 속도와 비용을 위해 주 원장 밖에서 거래를 처리하고 주기적으로 요약본을 주 원장에 게시하는 네트워크로, 이더리움의 Arbitrum, Optimism, Base나 비트코인의 Lightning이 그 예입니다. 레이어 2상의 자산은 통상 주 체인의 브리지 계약에 잠겨 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원장 기반 증권(Ledger-based security, Registerwertrecht)** — 스위스 채무법(CO) 제973d조 제2항의 기능적 요건을 충족하여 분산원장상에서 증권으로 발행된 권리로, 원장 기재와 권리가 일체화됩니다. 이전은 원장 기재로 이루어집니다. 2021년 2월 1일 도입되었으며, 두 허브를 통틀어 원장 자체가 증권의 등록부가 되는 유일한 형태입니다.[3]

**한정 목적 DPT(Limited-purpose DPT)** — 2019년 지급서비스법 s. 2(1)의 *DPT* 정의에서 제외되는 싱가포르의 예외로, 게임 아이템이나 포인트와 같이 폐쇄형 시스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말합니다. 토큰을 시스템 밖에서 금전이나 다른 DPT와 교환할 수 있게 되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리퀴드 스테이킹(Liquid staking)** — 스테이킹된 포지션을 표상하는 stETH나 rETH와 같은 양도 가능한 영수증 토큰을 발행하는 프로토콜을 통한 스테이킹으로, 이 영수증 토큰은 자유롭게 거래되며 디파이 전반에서 담보로 사용됩니다.

**유동성 풀(Liquidity pool)** — *AMM*이나 대출 프로토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자가 예치한 토큰을 보유하는 스마트 계약입니다. 제VI장의 분석은 풀이 공급자를 대신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봅니다.

**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 LP)** — *LP* 토큰과 풀이 트레이더로부터 얻는 수수료의 일부를 받는 대가로 유동성 풀에 토큰을 예치하는 자입니다.

**LP 토큰(LP token)** — 유동성 풀에 대한 비례 지분을 표상하는 토큰으로, 소각하면 풀의 자산과 누적 수수료 가운데 보유자의 몫으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디파이 토큰 가운데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가장 뚜렷한 후보입니다.

**밈코인(Memecoin)** — 효용,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또는 프로젝트가 없는 지급형 토큰으로, 그 가치는 커뮤니티의 관심에 의존합니다. FINMA의 분류체계상 지급형 토큰이며 싱가포르에서는 *DPT*입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멤풀(Mempool)** — 네트워크에 전파되었지만 아직 블록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의 집합입니다. 대기 중인 거래는 모든 참여자에게 보이므로,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누구든 선행매매(front-running)를 할 수 있습니다.

**MiCA** — 가상자산시장에 관한 규정(EU) 2023/1114로, 스테이블코인에는 2024년 6월 30일부터, 그 밖의 가상자산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스위스나 싱가포르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두 허브의 EU 거래상대방을 규율합니다.

**채굴자(Miner)** — 연산을 투입하여 블록을 제안하고 새 토큰과 수수료를 얻는 작업증명 네트워크의 참여자입니다. 채굴 수입은 그 활동이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두 허브 모두에서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발행(Mint)** — 계약 함수에 의해 새 토큰을 생성하는 것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고, 래핑 토큰이 생성되며, 유동성이 예치될 때 *LP* 토큰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다자간 연산(Multi-party computation, MPC)** — 키 조각을 보유한 여러 당사자가 어느 당사자도 전체 개인키를 알지 못한 채 공동으로 서명을 생성하는 암호 기술로, 현재 대부분의 기관용 수탁 플랫폼이 이를 사용합니다.

**멀티시그(Multi-signature, multisig)** — 원장 자체에서 설정되어 여러 키 가운데 일정 수, 예컨대 3개 중 2개가 모든 거래에 서명해야 하는 주소입니다. *MPC*는 오프체인에서 비슷한 결과를 얻습니다.

**노드(Node)** — 원장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원장 사본을 보유하는 컴퓨터입니다. 풀 노드는 모든 거래를 검증하며, 검증인과 채굴자는 블록 제안도 하는 노드입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 — 계약이 각 단위마다 고유 식별자를 기록하여 단위들을 서로 구별할 수 있는 토큰입니다. 분류는 표상되는 권리에 따릅니다. 고유한 NFT는 일반적으로 두 허브 모두에서 금융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시리즈형 또는 분할형 NFT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옴니버스 월렛(Omnibus wallet)** — 분리 월렛과 달리 수탁기관이 여러 고객의 토큰을 하나 또는 소수의 주소에 보유하고 고객의 권리는 수탁기관의 장부에만 기록하는 보관 방식입니다. 스위스법은 DEBA 제242a조에 따라 고객의 지분이 '즉시 귀속 가능'한 경우 도산 시 옴니버스 고객을 보호합니다.

**오라클(Oracle)** — 가격 등 외부 데이터를 스마트 계약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Chainlink가 지배적인 제공자입니다. 오라클의 장애나 조작은 디파이 손실의 주요 원인이며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책임 문제입니다.

**지급형 토큰(Payment token)** — 비트코인과 이더처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없이 지급 또는 가치 이전 수단으로 의도된 토큰에 관한 FINMA의 범주입니다. 그 발행은 AMLA의 적용을 받지만 증권법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 perp)** — 만기가 없는 선물계약으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보유자 사이의 펀딩 지급을 통해 현물 가격에 연동됩니다. 스위스법과 싱가포르법 모두에서 파생상품에 해당합니다.

**허가형 원장(Permissioned ledger)** — 은행 컨소시엄과 대부분의 토큰화 시범사업에서처럼 노드가 사전 승인된 알려진 주체인 원장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공개형 또는 비허가형 원장과 달리 결정론적 최종성과 식별 가능한 운영자를 제공합니다.

**포인트(Points)** — 프로젝트가 관리하는 오프체인 집계로, 사용자 활동을 기록하며 향후 출시 시 토큰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인트는 어떤 규제상 분류체계에도 속하지 않지만 부실표시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키(Private key)** — 보유자가 대응하는 주소로부터 토큰을 이동하는 거래에 서명할 수 있게 해주는 큰 난수입니다. 개인키는 토큰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부여하는 유일한 사실이며, 이 책의 모든 수탁 및 도산 분석의 토대입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지분증명(Proof of stake)** — 검증인이 토큰을 보증금으로 잠그고 지분에 비례하여 블록 제안자로 선정되며, 부정행위는 슬래싱으로 처벌되는 합의 메커니즘입니다. 이더리움은 2022년 9월부터 지분증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업증명(Proof of work)** —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합의 메커니즘으로, 채굴자가 블록 제안 권리와 그에 따른 보상을 얻기 위해 연산 퍼즐 풀이를 경쟁합니다.

**프로토콜(Protocol)** — 디파이 서비스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규칙과 스마트 계약의 집합입니다. 프로토콜은 사람이 아니며, 그 배후에 누군가가 있는지가 제VI장과 제VII장의 핵심 규제 문제입니다.

**공개키(Public key)** — 일방향 함수를 통해 개인키에서 도출되는 값으로, 여기서 다시 주소가 도출됩니다. 공개키 덕분에 누구나 개인키를 알지 못해도 서명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목적 제한 화폐(Purpose-bound money, PBM)** — MAS가 2023년 6월 발표한 싱가포르의 설계 개념으로, 디지털 화폐 토큰을 사용 방법과 장소를 제한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계층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제한은 계약상의 것이며 기초가 되는 화폐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시 귀속 가능(Readily attributable)** — 스위스 수탁기관의 파산 시 혼합 보관된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반환하기 위한 DEBA 제242a조 제2항 b호의 기준입니다. 수탁기관의 기록이 재구성 없이 각 고객의 지분을 보여주는 경우 이 기준이 충족됩니다.

**등록 합의(Registration agreement)** — 스위스 채무법 제973d조 제1항에 따른 합의로, 권리의 당사자들이 그 권리를 특정 원장상의 원장 기반 증권으로 발행하기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 합의는 원장에 기록되거나 원장과 연결되어야 하며, 포크 후 어느 체인이 '해당 원장'인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재담보(Rehypothecation)** — 수탁기관이 고객 자산을 대여나 담보 제공 등 자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두 허브 모두에서 수탁 관계를 종료시키고 고객을 무담보 채권자로 전환합니다.

**리스테이킹(Restaking)** — 이미 스테이킹된 토큰이나 리퀴드 스테이킹 영수증을 추가 서비스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 보상을 얻고 추가적인 슬래싱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EigenLayer가 2023년과 2024년에 도입했습니다.

**롤업(Rollup)** — 거래를 오프체인에서 실행하고 압축된 데이터나 유효성 증명을 주 체인에 게시하는 레이어 *2*의 한 유형입니다. 옵티미스틱 롤업은 이의 제기를 허용하고, 영지식 롤업은 암호학적 증명을 게시합니다.

**시드 문구(Seed phrase)** — BIP-39 표준에 따라 월렛이 모든 개인키를 도출하는 시드를 인코딩한 12개 또는 24개의 단어 배열입니다. 시드 문구를 보유한 사람은 그로부터 도출된 모든 주소를 통제합니다.

**분리 월렛(Segregated wallet)** — 각 고객의 토큰을 수탁기관이 통제하는 별도의 주소에 보유하는 보관 방식입니다. 옴니버스 월렛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두 허브 모두에서 도산 시 가장 깔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단순조합(Simple partnership, einfache Gesellschaft)** — 스위스 채무법 제530조 이하에 따른 스위스의 보충적 형태로, 다른 법적 형태를 채택하지 않고 공동의 자원으로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합이며, 조합원은 무한 연대책임을 집니다. 래핑되지 않은 *DAO*의 기본적인 법적 분류입니다.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Single-currency stablecoin, SCS)** — MAS가 2023년 8월 15일 발표한 규제 범주로, 싱가포르달러 또는 G10 통화에 연동되고 준비자산, 자본, 상환 및 공시 요건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말합니다. 요건을 준수하는 발행인만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슬래싱(Slashing)** — 지분증명에서 부정행위나 가동 중단에 대한 벌칙으로 검증인이 스테이킹한 토큰의 일부를 파기하는 것으로, 스테이킹을 제공하는 수탁기관이 공시하고 관리해야 하는 위험입니다.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 원장에 저장되어 거래에 의해 호출될 때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이행의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법적 의미의 계약은 아닙니다. 이와 상호작용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법적 계약이 존재하는지는 일반 계약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울바운드 토큰(Soulbound token)** — 하나의 주소에 귀속되어 자격 증명이나 증명서로 사용되는 양도 불가능한 *NFT*로, 거래하거나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모든 금융 분류체계에서 벗어납니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 기준 대상, 대개 법정화폐에 대해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토큰으로, 제IV장은 그 배후의 상환 약속에 따라 법정화폐 담보형, 가상자산 담보형 또는 알고리즘형으로 분류합니다.

**스테이킹(Staking)** — 검증 보상을 얻기 위해 토큰을 지분증명 네트워크에 제공하는 것으로, 단독 스테이킹부터 위임 스테이킹, 수탁형 스테이킹, 리퀴드 스테이킹에 이르는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20일자 FINMA 지침 08/2023은 수탁형 스테이킹에 관한 스위스의 요건을 정합니다.

**토큰(Token)** — 분산원장에 기록된 가치나 권리의 단위로, 이 책은 모든 그러한 단위에 이 용어를 사용하며 '가상자산'과 '디지털 자산'은 일반적인 부류를 가리키는 데 사용합니다.

**총예치금(Total value locked, TVL)** — 디파이 프로토콜 또는 업계 전체에 예치된 자산의 총가치로, 규모를 측정할 뿐 안전성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트래블 룰(Travel rule)** — 규제 대상 중개기관 사이의 가상자산 이전 시 송금인과 수취인에 관한 정보가 함께 전달되어야 한다는 FATF 요건으로, 스위스에서는 AMLO-FINMA 제10조를 통해, 싱가포르에서는 MAS Notice PSN02를 통해 시행됩니다.

**비수탁형 월렛(Unhosted wallet)** — 규제 대상 중개기관이 아닌 사용자 자신이 통제하는 월렛으로, 자가보관 월렛 또는 개인 월렛이라고도 합니다. 비수탁형 월렛과의 이전에는 두 허브 모두에서 특별한 트래블 룰 및 실사 요건이 적용됩니다.

**유틸리티형 토큰(Utility token)** —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접근을 제공하는 토큰에 관한 FINMA의 범주입니다. 판매 시점에 서비스가 존재한다면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 가동되지 않은 서비스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판매된다면 FINMA는 이를 자산형 토큰으로 취급합니다.

**UTXO 모델(UTXO model)** —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원장 설계로, 가치를 개별적인 미사용 거래 출력(unspent transaction outputs)으로 추적하며, 각 출력은 전부 사용되고 새로운 출력으로 대체됩니다. 계정 모델과 달리 계보 기반 추적이 가능합니다.

**검증인(Validator)** — 토큰을 보증금으로 잠근 후 블록을 제안하고 증명하는 지분증명 네트워크의 참여자로, 정직한 참여에 대해 보상을 받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슬래싱을 당합니다.

**월렛(Wallet)** — 개인키를 저장하고 거래에 서명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입니다. 토큰 자체는 원장에 남아 있으므로 월렛에는 키 외에는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백서(White paper)** — 토큰 프로젝트와 그 기술 및 경제 구조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MiCA에서는 규제 대상 공시 문서입니다. 금융서비스법(FinSA)과 SFA에서는 토큰이 증권이고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투자설명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래핑 토큰(Wrapped token)** — 브리지를 통해 다른 원장에 잠긴 토큰을 표상하는 한 원장상의 토큰으로, WBTC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잠긴 자산을 통제하는 자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 한 당사자가 기초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어떤 진술이 참임을 증명하는 암호학적 방법입니다. 확장성을 위해 롤업에 사용되고, 신원 시스템에서는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나이나 관할권과 같은 속성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F편과 제L편은 자금세탁방지 준수 설계와 관련한 그 의미를 검토합니다.

## 주

1. Anti-Money Laundering Act, SR 955.0, 제2조 제3항(비은행 부문의 금융중개기관). 제F편 제I장 참조. ↩
2. Payment Services Act 2019 (Singapore), s. 2(1). 이 정의에서는 전자화폐와 한정 목적 *DPT*가 제외됩니다. 제K편 제I장 참조. ↩
3. Code of Obligations, SR 220, 제973d조~제973i조. 제D편 제III장 참조. ↩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